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76
------	------

발의일자 : 2025. 1. 23.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 나. 운영비 지원 조항에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문구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별도 규정함(안 제13조).
-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8조, 제33조의2, 제43조,  
제4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를  
“금천구체육회”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  
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  
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7. (생 략)</p> <p>제13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u>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u>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2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13조(운영비 지원) ----- ----- --- <u>금천구체육회</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도·감독) ① <u>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u></p>

제18조 (생 략)

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  
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24. 12. 3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7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금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22.8.15.>

④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우수선수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삭제 2021.9.29.>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 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1.9.29.]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 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중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31.>]

**제15조(대부·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7조에 따라 대부·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6조(대부·사용허가 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기간은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허가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7조(대부·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 부 칙 (제964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

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을 “행정문화국장” 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제1197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을 “문화환경국장” 으로 한다.

⑩~⑰ 생략

부 칙 (제1272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